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9. 3 선고 2023가단1907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중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미 담당변호사 김진모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8. 20.

판 결 선 고 2024. 9. 3.

주 문

- 가. 피고와 C 사이에 경기 양평군 D 공장용지 368㎡에 관하여 2022. 8.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32,296,61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2,296,6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장진영

(별지)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가기금인 'E'의 관리기관입니다.

- ① 원고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의하여 국가기금인 'E'의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② 'E'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자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기금입니다.

[표1]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E) ① 농림수산업자등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A중앙회에 E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내지 ⑤ (생략)
제5조(관리기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신용보증에 관한 업무는 A중앙회에서 취급한다.

나. 소외 영농조합법인 F은 원고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영농조합법인 F의 대표이사인 소외 C은 영농조합법인 F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 (1) 아래 [표2]의 기재와 같이, ① 소외 영농조합법인 F이하 '소외 법인'라 하겠습니다)은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뒤,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G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C은 소외 법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② 그러나 소외 법인은 기한 내에 G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습니다. ③ 이에 원고는 소외 법인의 G은행에 대한 채무 중 합계 150,723,800원을 대위변제하였습니다(갑 제1호증의1 신용보증약정서, 갑 제1호증의2 신용보증서, 갑 제1호증의3 여

신거래약정서, 갑 제1호증의4 대위변제증서, 갑 제1호증의5 보증원장조희표).

[표2]

순 번	보증 번호	신용 보증 약정일	대출일	대출금액 (원) 보증금액 (원)	보증기한 (최종보증 기한)	대위 변제일	대위 변제금	보증 상대처
1	H	2017.10.25	2017.10.27	200,000,000 170,000,000	2020.10.26 (2023.04.26)	2023.7.10	150,723,800	G 은행

다. C은 본인 소유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습니다.

C은 ① 2022. 8. 10. 피고와 경기 양평군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하겠습니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 이라 하겠습니다)을 체결하고, ②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갑 제2호증 등기사항증명서).

2. 피보전채권의 존재(사전구상권 및 사후구상권의 발생)

(가) ① 주채무의 이행기의 도래 등 민법 제442조 제1항 소정의 사유나 기타 신용 보증약정에서 따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대법원 2000다38947 판결), ② 사전구상권의 범위에는 채무의 원본과 이미 발생한 이자가 포함됩니다(대법원 2001다25504).

(나) ① 소외 법인의 G은행에 대한 채무의 변제기가 2023. 4. 26. 도래하였습니
② 따라서 그 다음 날인 2023. 4. 27. 원고의 소외 법인 및 C에 대한 사전구상권

(보증금액 170,000,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 원고의 사전구상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22. 8. 10. 이후인 2023. 4. 27.에 발생하였지만, 아래와 같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라)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마) 또한 ① 이 사건 증여계약 등이 체결된 2022. 8. 10. 당시 원고와 소의 법인 사이에 구상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다는 점, ② 소의 법인의 경우 2021. 10. 27. 약정기일미변제를 이유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갑 제1호증의5 보증원장조회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까지 마쳐진 적이 있었다는 점(갑 제2호증 등기사항증명서), ③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22. 8. 10.로부터 약 8개월 만인 2023. 4. 26. 원고의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였고, 다시 그로부터 약 3개월 만인 2023. 7. 10.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한 사후구상권이 발생하였다는 점, ④ 아래 4.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C과 피고는 부자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바) 즉, 위 (라)항에 기재한 대법원 2011다76426 판결의 취지 및 위 (마)항에 기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소외 법인 및 C에 대한 사전구상권 및 사후구상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3. C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문제 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2005다33602 판결).

(2) 이 사건 토지는 C의 유일한 적극재산으로 보이고, 그 가액은 83,000,000원으로 추정됩니다.^{주1,2)} 그런데 소극재산으로는 원고가 보증한 G은행의 채무만 하여도 170,000,0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신용보증약정서 등).

주1) ① 이 사건 부동산인 D 토지의 공시지가 기준 가액은 55,494,400원(368㎡ × 150,800원/㎡, 갑 제3호증의1 토지대장)인데, ② 이 사건 인근 토지인 I 토지의 공시지가 기준 가액은 142,324,000원(2392㎡ × 59,500원/㎡, 갑 제3호증의2 토지대장)입니다. ③ 그런데 위 I 토지는 2023. 6. 20. 공시지가 기준 가액의 약 1.5배인 215,000,000원에 거래되었습니다(갑 제4호증 등기사항증명서).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도 공시지가 기준 가액의 1.5배인 83,000,000원(십만원 이하 절사)으로 추정됩니다.

주2) 아래 5.항의 기재와 같이 본 사안의 경우 가액배상을 구하여야 하므로, 소송 중 감정 등으로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① 즉 이 사건 증여계약일 2022. 8. 10.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그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습니다. ②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할 것입니다.

4. 피고의 악의

(1)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을 통해 본인의 선의를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또한 ① C(1952년생)과 피고(1980년생)의 나이와 이름,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지가 경기도 양평군 J로 같다는 점(갑 제2호증 등기사항증명서), ②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C의 아들로 보이므로, 피고의 악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5. 원상회복의 방법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날(2022. 8. 10.) 이후인 2017. 12. 28. K은행 명의로 설정되어 있던 기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② 이 사건 증여계약일 이후에 2023. 7. 3.자 K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채무자 피고)이 새롭게 설정되어 가액배상을 구하여야 합니다(갑 제2호증 등기사항증명서).

(2)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설정되어 있던 2017. 12. 28.자 K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은 이 사건 부동산 포함 12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에 위 12개의 부동산 중 이 사건 부동산이 차지하는 가액에 비

래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액배상액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3) ① 다만 현재 시점에서 위 12개 부동산 중 이 사건 부동산이 차지하는 가액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② 위 3. (2)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83,000,000원으로 추정된다는 점, 금융기관이 근저당권 설정당시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120%정도로 정하고 있는 점, 부동산의 시가보다 채권최고액을 적게 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③ 일단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중 30% 정도인 24,900,000원을 가액배상액으로 정하고, 소송 중 갑 정 등을 통하여 가액배상액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결어

위와 같이 원고는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청구원인

- 2024. 5. 29.자 감정평가서(갑 제5호증)에 따라 청구금액을 변경하고, 채무초과 등을 정리합니다.

1. 사해행위 당시 C의 채무초과에 대하여

(1) 2024. 2. 19.자 법원행정청 회신 등에 의하면, 피고가 2022. 8. 10. C과 경기 양평군 D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하겠습니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하겠습니다)을 체결할 당시 C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표]

구분	순번	재산표시	가액(원)	비고
적극 재산	1	경기도 양평군 D 토지(이 사건 부동산)	89,424,000	갑 제5호증 감정평가서 5쪽,
	2	경기도 양평군 L 토지중 6분의1 지분	17,582,000	갑 제6호증
	3	경기도 양평군 M 토지 중 6분의1 지분	10,135,530	각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
	합계		117,141,530	
적극 재산	1	원고의 대위변제금 원금	150,723,809	갑 제1호증의 1 내 지 5 신용보증약정서 등
	합계		0	

- (2) ① 위 [표]의 기재와 같이 C은 이 사건 증여계약일 2022. 8. 10.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그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습니다.
- ②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할 것입니다.

2. 피고의 악의

- (1)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2) 따라서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을 통해 본인의 선의를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 (3) 또한 ① C(1952년생)과 피고(1980년생)의 나이와 이름,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지가 경기도 양평군 J로 같다는 점(갑 제2호증 등기사항증명서), ②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C의 아들로 보이면, 그 악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3. 원상회복에 관하여

(1) 가액배상 사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이 사건 증여계약일(2022. 8. 10.) 이후인 2023. 7. 3.에 기존 근저당권(채무자 영농조합법인F, 근저당권자 K은행, 2017. 12. 28. 접수)이 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② 같은 날 근저당권(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K은행, 2023. 6. 27. 접수)이 새롭게 설정되어 가액배상을 구하여야 합니다(갑 제2호증 등기사항증명서).

(2) 가액배상 범위

(가)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다249000 판결은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이 때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 위 대법원 2015다24900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① 이 사건 부동산 외 11개의 부동산에 K은행 공동저당권(채무자 영농조합법인F, 근저당권자 K은행, 2017. 12. 28. 접수)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갑 제7호증의 1 내지 12 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②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인 부분은, K은행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이 사건 부동산 외 11개의 부동산’의 가액인

2,360,414,960원^{주1)}에 비례하여 K은행 명의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1,511,414,794원^{주2)}을 안분한 금액 57,495,381원^{주3)}이므로, ③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89,792,000원에서 위 57,495,381원을 공제한 32,296,619원의 가액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주1) 2,360,414,960원 = 감정평가서(갑 제5호증) 6쪽 합계 금액 2,388,320,150원 중 공동담보의 대상인 아닌 13번 부동산의 가액 17,700,000원 및 14번 부동산의 가액 10,205,190원을 공제한 금액

주2) 1,511,414,794원 = 피담보채권 원금 1,500,000,000원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인 11,414,794원(2024. 1. 25.자 K은행 회신 7쪽 93번 이자)을 기준으로 하였습다.

주3) 57,495,381원 = 위 1,511,414,794원 ×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89,792,000원 ÷ 위 2,360,414,960원(원 미만 올림)

4. 결어

(1) 위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이상과 같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고 종전 기재 내용 중 이 변경신청서에 반하지 않는 부분은 원용하도록 하겠습니다.

